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1. 8.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에 의거 설치된 우리시의 금고약정기간이 2009. 1. 1 ~ 201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2012년 구미시 금고 지정을 위하여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금고의 지정

☐ 금고신청 자격

- 관련법 : 은행법 제2조, 제5조, 제8조에 의한 금융기관

☐ 금고선정방법

- 경쟁방법
- 수의방법
 - 재지정시 “구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경쟁, 수의방법 결정

☐ 현재 금고지정 현황

(2011. 6.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금고명	회계명	예산액	예치금액
	계	1,277,021	125,225
대구은행	일반회계	888,133	7,399
농협	특별회계(12개)	237,713	89,730
”	기금 (10개)	10,695	10,434
”	공기업 특별회계	140,480	17,662

□ 심의위원회 구성

- 인원 : 9명
 - 시 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7월 28일
- 시의회 의견 청취 : 8월 말
- 기존 금고 제안서 제출(2011. 6. 30. 기준) 요청 : 8월 말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9월 10일 한
 - 수의방법(재지정)의결 : 금고지정후 10일 이내 시보에 공고, 금융기관 통보, 약정체결
 - 경쟁방법 의결 : 금고약정 만료 3개월(2011. 10. 1)전까지 공고, 관련 금융기관 통보 및 경쟁방법으로 전환 추진

《관 련 법》

□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02-2100-4130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744호, 2008.07.16, 제정]

조례 제0875호, 2011.05.20, 일부개정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포함)로 구분하며 회계별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